

의안번호	제 817 호
의 결 연 월 일	2021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1년 8월 25일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7
----------	-----

발의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발 의 자 : 김국기,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1. 제안 이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유전자변형 식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정의에 “안전한 식재료”의 내용을 보완하고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2조)

나. 제3조의 제목 “(기본계획수립)”을 “(교육감의 책무)”로 변경함 (안 제3조)

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 체육건강안전과

라. 입법예고: 2021.8.19.(목) ~ 2021.8.24.(화)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

7.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기본계획수립)”을 “(교육감의 책무)”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 략)</p> <p>5. “<u>안전한 식재료</u>”란 「<u>학교급식법 시행규칙</u>」 제4조제1항 관련 <u>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식재료를 말한다.</u></p> <p>6. (생 략)</p> <p><u><신 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안전한 식재료</u>”란 <u>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학교급식법 시행규칙</u>」 제4조제1항 관련 <u>별표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식품위생법</u>」 제12조의2에 따른 <u>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u></p> <p>6. (현행과 같음)</p> <p>7. “<u>유전자변형식품</u>”이란 <u>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u></p>
<p>제3조(<u>기본계획수립</u>) 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u>교육감의 책무</u>) ① ~ ③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u>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 자제</u>) ① <u>교육감은 학생의</u></p>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 식품위생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7.]

[제목개정 2016. 2. 3.]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 2019. 10. 2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98호, 2019. 10. 28.,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 식품첨가물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 중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축산물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원재료“란 인위적으로 가하는 물을 제외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공보조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가공보조제로써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안정제(식품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
3. “구분유통증명서“란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정부증명서“란 제3호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5. “검사불능“이란 PCR 검사에서 내재유전자의 증폭산물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6. “비의도적 혼입치“란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구분하여 관리한 경우에도 그 속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7. “주표시면“ 이란 용기·포장 등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 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 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가. 구분유통증명서

나. 정부증명서

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주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의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